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종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979 발의연월일: 2024. 7. 19.

발 의 자:김종민·어기구·박민규

황명선 · 정진욱 · 김한규

최민희 • 박수현 • 이수진

이재관 • 이정문 • 문진석

강준현 • 윤종오 • 이워택

민형배 · 정동영 의원

(17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있음. 다만,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 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2022년에 마련한 바 있음.

그러나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전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. 또한, 행정중심복합 도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,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대통령 집무실 설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, 그 시한을 2027년 5월 9일까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호, 제16조의2).

법률 제 호

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본문 중 "대통령은 제외하며, 이하"를 "이하"로 한다.

제16조의2 중 "설치할 수 있다"를 "2027년 5월 9일까지 설치한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행정중심복합도시"란 제16	1
조의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	
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(<u>대통</u>	<u>০</u>) চৌ
령은 제외하며, 이하 "중앙행	
정기관등"이라 한다)을 이전	
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	
복합도시로 새롭게 건설하는	
도시로서, 제2호에 따른 예정	
지역과 제3호에 따른 주변지	
역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	
한다. 다만, 제5조에 따라 법	
률로 행정구역이 정하여지는	
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.	
2.・3. (생 략)	2.・3. (현행과 같음)
제16조의2(대통령과 그 소속기관	제16조의2(대통령과 그 소속기관
의 집무실 설치) 대통령과 그	의 집무실 설치)
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	
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	
무실을 <u>설치할 수 있다</u> .	<u>2027년 5월 9일까지 설</u>
	<u>치한다</u> .